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39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위성곤·김기표·이건태
이학영·박희승·최혁진
박지혜·이소영·박정현
서영교·이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 결정에서, 현행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점진적·지속적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면서,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감축경로를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한편, 현행의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권한 부족과 부처 간 분산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예산 및 원칙을 신설하고, 장기감축 목표를 명문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앞당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탄소예산의 정의 및 원칙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에 35%, 2035년에 60%, 2040년에 80%, 2045년에 9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정함(안 제8조제1항).

다. 국가기후위원회 · 지방기후위원회의 설치(안 제15조 및 제22조)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기후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을 강화함.

라.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국가기후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와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과학적인 평가·분석·검증 결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특정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말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030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연도”로, “35퍼센트”를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위하여”를 각각 “위하여 2050년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으로 본다.

1. 2030년: 100분의 35 이상

2. 2035년: 100분의 60 이상

3. 2040년: 100분의 80 이상

4. 2045년: 100분의 95 이상

10. 제8조의2에 따라 산출된 국가 탄소예산

11. 기후과학위원회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권고 사항

1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13.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탄소예산 산출) ① 제22조의3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 탄소예산의 추정치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3. 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국가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4.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중장기감축목표등에 대한 권고안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탄소예산의 산출 방법,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를 “지방기후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위원회의”를 “지방기후위원회의”로,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위원회”를 각각 “지방기후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국가기후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국가기후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8.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9.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0.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편성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1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1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7.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부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4.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을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

로 개시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4(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6조의5(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6조의6(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분과위원회

2. 기후변화 적응 분과위원회

제22조의 제목·제1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지방기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지방위원회”를 각각 “지방기후위원회”로 한다.

제4장에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

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둔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둔다.

1.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2.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처장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국민 참여·소통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5.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후시민회의는 매년 접수된 국민 아이디어와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분석·예측·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상임위원(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기후과학·환경과학·경제학·사회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나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를 말한다)에서 8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 및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 및 제22조의7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기후과학위원회”로 본다.

⑤ 기후과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센터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예측·검증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및 진전동향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라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과 진전동향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전략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9.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에 관한 사항

10. 제37조에 따른 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에 관한 사항
11.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동향에 관한 사항
12. 제47조에 따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에 관한 사항
13. 제77조에 따른 국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14.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15. 국회 및 위원회에서 분석 등을 요청한 사항
16.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나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기후과학위원회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등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평가·분석·예측·검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정책 등의 수정·변경 권고 등)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정책 등의 보고서 및 정책 등의 수정·변경에 관한 권고 사항을 기후과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정부와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국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 또는 행정계획, 정책의 수립·변경, 예산에 그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통보받은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의6(기후과학위원회의 독립성) 기후과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2조의7(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

무원이나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부에”를 “위원회에”로 한다.

제40조제2항 본문 중 “지방위원회의”를 “지방기후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위원회의”를 “지방기후위원회의”로,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5항 중 “보고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2조제1호 중 “지방위원회”를 “지방기후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승계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사무와 관련

하여 환경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환경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7. (현행과 같음) 18. <u>“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특정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말한다.</u>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 8. (생략) <u><신설></u>	제3조(기본원칙)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u>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③ (생략)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④ -----

-----국가기후위원회-----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은-----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 다음 각 호

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후단 시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

의 구분에 해당하는 연도-----

----- 해당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비율 -----

----- . 이 경우 국가 온실가

스 배출량은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

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

을 상쇄한 순배출량으로 본다.

1. 2030년: 100분의 35 이상

2. 2035년: 100분의 60 이상

3. 2040년: 100분의 80 이상

4. 2045년: 100분의 95 이상

② -----

----- 위하여 2050년까지

의 -----

----- .

③ -----

----- 위하

여 2050년까지의 -----

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9.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⑥·⑦ (생략)

<신설>

④ (현행과 같음)

⑤

1. ~ 9. (현행과 같음)

10. 제8조의2에 따라 산출된 국가 탄소예산

11. 기후과학위원회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권고사항

1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13.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⑥·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탄소예산 산출) ① 제22조의3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④ (생략)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
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

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국가 탄소예산의 추정치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
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3. 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국가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4.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중장기감축목표등에 대한 권
고안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
가탄소예산의 산출 방법,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은---

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
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
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
·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
기후위원회의-----

-----.

⑤ -----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 상황 점검) ① (생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계획은 환경부장관에게, 시·군·구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기후환경에너지
부장관-----
-----기후환경
에너지부장관-----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 상황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기후위원
회의-----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기후환경
에너지부장관-----
-----기
후환경에너지부장관-----

③・④ (생략)

제14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장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기후위원회

(3) -----지방기후위원회

④ ----- 지 방 기 후 위 원
회-----

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⑥ (생략)

제4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장 국가기후위원회 등

제15조(국가기후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7.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

6.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8.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9.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0.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편성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1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1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7.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부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에서 8년 이상 있거
나 있었던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
람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
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
· 자원, 녹색기술 ·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
는 사람

4.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
책을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신 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4(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신 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
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
연히 퇴직한다.

제16조의5(직무상 독립과 신분보
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
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각
각 5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
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신 설>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
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에 따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
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6조의6(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
직원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
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
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분과
위원회
2. 기후변화 적응 분과위원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방기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기후위원회-----.

② 지방기후위원회-----
-----지방기후위원회-----.

③ 지방기후위원회-----

-----.

④ -----
-----지방기후위원회-----

-----.

<신 설>

제22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둔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둔다.

1.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2.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처장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국민 참여·소통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5.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

<신 설>

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 · 자원, 녹색기술 ·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후시민회의는 매년 접수된 국민 아이디어와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분

석·예측·검증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독립
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상임
위원(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으로 구성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
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기후과학·환경과학·경제학
·사회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
진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공
공기관이나 대학(「고등교육
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를
말한다)에서 8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
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신 설>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 겸직금지 등 및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 및 제22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기후과학위원회”로 본다.

⑤ 기후과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센터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예측·검증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
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및 진전동향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국가 탄소
예산의 산출과 진전동향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전략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
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자원
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
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9.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
출거래제에 관한 사항
10. 제37조에 따른 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에 관한 사항

11.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
기 적응대책과 진전동향에 관
한 사항

12. 제47조에 따른 기후위기 사
회안전망에 관한 사항

13. 제77조에 따른 국가보고서
에 관한 사항

14.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15. 국회 및 위원회에서 분석
등을 요청한 사항

16.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
하여 정부나 국회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보고서를

<신 설>

작성할 수 있다.

④ 기후과학위원회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등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평가·분석·예측·검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정책 등의 수정·변경 권고 등)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정책 등의 보고서 및 정책 등의 수정·변경에 관한 권고 사항을 기후과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국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 또는 행정계획, 정책의 수립·변경, 예산에 그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통보받은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기후과학위원회에

<신 설>

<신 설>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의6(기후과학위원회의 독립성) 기후과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2조의7(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u>환경부장관</u> 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 ----- -----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 ----- ----- -----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u>환경부장관</u> 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③ -----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
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
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
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
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
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략)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
계의 구축) ① -----

위원회에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
음)

②

지방기후위원회의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생략)

-----.

③ -----

-----기후환경에너지

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

부장관-----

-----.

④ -----

-----지방기후위원회의-----

-----기후환경

에너지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

부장관-----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취약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실적을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
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
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생략)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② -----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기후환경
에너지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

④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④ (생 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u>보고할 수 있다.</u> ⑥ (생 략) 제8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u>지방위원회</u>, 제19조 제1항·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보고하여야 한다.</u> ⑥ (현행과 같음) 제8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 1. -----<u>지방기후위원회</u>----- ----- ----- ----- 2. (현행과 같음)
---	--